

의안번호	제299호
의결 연월일	2019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9년 10월 31일

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칩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99
----------	-----

제출연월일 : 2019년 10월 31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준용
 - 차량통행량이 적고 통행속도가 빠르지 않은 측도의 변속차로 최소길이를 완화하고 태양광 발전시설 연결허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별표5]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개정
 - 측도의 차량통행량, 통행속도 등을 고려하여 본선의 변속차로 설치길이보다 완화한 기준 신설
 - 태양광발전시설에 연결하는 변속차로 설치기준 신설(도로 모서리 곡선화)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발취 : 붙임

6.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5] <개정 2010. 1. 1, 2015. 10. 30, 2019. 3. 11.>

변속차로의 최소길이(제8조제1호 관련)

1. 지구단위계획구역,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의 경우

가. 본선에 변속차로를 설치하는 경우

(단위: 미터)

시 설	주차 대수 또는 가구수 등	감속부의 길이		가속부의 길이	
		감속차로	테이퍼	가속차로	테이퍼
1) 공단 진입로 등	-	40 (25)	15 (10)	65 (45)	20 (15)
2) 휴게소 및 주유소 등	-	40 (25)	15 (10)	65 (45)	20 (15)
3) 자동차정비업소 등	-	25 (15)	10 (10)	직접식 가속차로 30(20)	
4) 사도·농로·마을진 입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	통로 등의 폭이 6m 미만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7m)			
	통로 등의 폭이 6m 이상	15 (10)	10 (10)	직접식 가속차로 25(20)	
5)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	20대 이하	15 (10)	10 (10)	직접식 가속차로 25(20)	
	21대 이상 50대 이하	25 (15)	10 (10)	직접식 가속차로 30(20)	
	51대 이상	40 (25)	15 (10)	65 (45)	20 (15)
6) 주차장·건설기계주 기장·운수시설·의 료시설·운동시설· 관람시설·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	20대 이하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7m)			
	21대 이상 50대 이하	25 (15)	10 (10)	직접식 가속차로 30(20)	
	51대 이상	40 (25)	15 (10)	65 (45)	20 (15)
7) 공장·숙박시설·업 무시설·근린생활시 설 및 기타시설	20대 이하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7m)			
	21대 이상 50대 이하	25 (15)	10 (10)	직접식 가속차로 30(20)	
	51대 이상	40 (25)	15 (10)	65 (45)	20 (15)

8) 주택 진입로 등	5가구 이하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3m)			
	6가구 이상 20가구 이하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5m)			
	21가구 이상 100가구 이하	25 (15)	10 (10)	직접식 가속차로 30(20)	
	101가구 이상	40 (25)	15 (10)	65 (45)	20 (15)
9) 농어촌 소규모 시설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 및 태양광 발전시설 등	-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3m)			

나. 측도에 변속차로를 설치하는 경우

(단위: 미터)

시설	주차 대수 또는 가구수	감속부의 길이		가속부의 길이	
		감속차로	테이퍼	가속차로	테이퍼
1) 가목1) 및 2)	-	10	3.5	15	5
2) 가목3)	-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7m)			
3) 가목4)	-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5m)			
4) 가목5)부터 7)까지	50대 이하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7m)			
	51대 이상	10	3.5	15	5
5) 가목8)	5가구 이하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3m)			
	6가구 이상 20가구 이하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5m)			
	21가구 이상 100가구 이하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7m)			
	101가구 이상	10	3.5	15	5
6) 가목9)	-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3m)			

다. 적용기준

- 1)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 2)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 3) 가목은 왕복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며, 괄호 안의 숫자는 왕복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 4)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 5) 가목4)의 주차 대수 또는 가구수 등란에서 "통로 등의 폭"이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최소 폭을 말한다.
- 6) 가목5)부터 7)까지 및 나목4)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2. 그 밖의 지역의 경우

가. 본선에 변속차로를 설치하는 경우

(단위: 미터)

시 설	주차 대수 또는 가구수	감속부의 길이		가속부의 길이	
		감속차로	테이퍼	가속차로	테이퍼
1) 공단 진입로 등	-	45 (30)	15 (10)	90 (65)	30 (20)
2) 휴게소 및 주유소 등	-	45 (30)	15 (10)	90 (65)	30 (20)
3) 자동차정비업소 등	-	30 (20)	10 (10)	60 (40)	20 (20)
4) 사도·농로·마을 진입로 또는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교 통용 통로 등	-	20 (15)	10 (10)	40 (30)	20 (20)
5)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	10대 이하	20 (15)	10 (10)	40 (30)	20 (20)
	11대 이상 30대 이하	30 (20)	10 (10)	60 (40)	20 (20)

	31대 이상	45 (30)	15 (10)	90 (65)	30 (20)
6) 주차장·건설기계 주기장·운수시설· 의료시설·운동시설· 관람시설·집회시 설 및 위락시설 등	30대 이하	30 (20)	10 (10)	60 (40)	20 (20)
	31대 이상	45 (30)	15 (10)	90 (65)	30 (20)
7) 공장·숙박시설· 업무시설·근린생활 시설 및 기타시설	20대 이하	20 (15)	10 (10)	40 (30)	20 (20)
	21대 이상 50대 이하	30 (20)	10 (10)	60 (40)	20 (20)
	51대 이상	45 (30)	15 (10)	90 (65)	30 (20)
8) 주택 진입로 등	5가구 이하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 반지름: 3m)			
	6가구 이상 100가구 이하	30 (20)	10 (10)	60 (40)	20 (20)
	101가구 이상	45 (30)	15 (10)	90 (65)	30 (20)
9) 농어촌 소규모 시 설(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 및 태양광 발전시설 등	-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 반지름: 3m)			

나. 측도에 변속차로를 설치하는 경우

(단위: 미터)

시설	주차 대수 또는 가구수	감속부의 길이		가속부의 길이	
		감속차로	테이퍼	가속차로	테이퍼
1) 가목1) 및 2)	-	10	3.5	15	5
2) 가목3)	-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7m)			
3) 가목4)	-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5m)			
4) 가목5) 및 6)	30대 이하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7m)			
	31대 이상	10	3.5	15	5
5) 가목7)	50대 이하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7m)			
	51대 이상	10	3.5	15	5
6) 가목8)	5가구 이하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3m)			
	6가구 이상 100가구 이하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7m)			
	101가구 이상	10	3.5	15	5
7) 가목9)	-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3m)			

다. 적용기준

- 1) 가목은 왕복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며, 괄호 안의 숫자는 왕복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 3) 가목5)부터 7)까지 및 나목4)·5)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관련법령 발취

□ 도로법

제52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①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고속국도나 자동차전용도로에는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발행위로 설치하는 시설 또는 해당 시설을 연결하는 통로 외에는 연결시키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나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자는 도로에 연결시키려는 해당 시설을 소유하거나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연결허가"라 한다)의 기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제23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연결허가를 할 때 도로와 다른 도로, 통로나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대량의 교통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교통체계상 다른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결허가를 받는 자에게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연결허가를 받아 도로에 연결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8조(변속차로) 변속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길이는 별표 5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할 것
2. 폭은 3.25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자동차의 진입과 진출을 원활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를 할 것
4. 사업부지에 접하는 변속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지름이 12미터 이상인 곡선으로 처리할 것.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곡선반지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5. 성토부, 절토부 등 비탈면의 기울기는 접속되는 도로와 같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설치할 것